

칸막이 해체작업에서 원형톱날에 베어 사망

재해 개요

'18. 00. 00. □□시 △구에 소재한 건물 1층 칸막이(가벽) 해체작업에서 재해자가 목재가공용 원형톱날이 장착된 전동 휴대용 핸드그라인더로 가벽을 절단하던 중 원형톱날이 작업자의 왼쪽 허벅지부분을 베어 사망한 재해

재해 관련 사진



< 기인물 : 휴대용연삭기 >

< 재해발생 상황도 >

재해 발생 원인

○ 작업도구 등의 목적외 사용

- 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나, 제조 사양에서 허용하지 않는 목재가공용 원형톱날을 장착하여 절단작업(비규격용 사용)

○ 휴대용연삭기의 방호덮개 설치

- 회전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, 휴대용연삭기에 덮개 미설치

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작업도구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규격용 사용

- 기계·기구·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. 제조사양에서 허용하는 연삭숫돌 및 절단날에 맞는 작업에만 사용(규격용 사용)

○ 휴대용연삭기의 방호덮개 설치

- 숫돌파손 시 파편으로 인해 충격 등에 전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덮개 설치